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71
----------	------

발의연월일 : 2016. 11. 15 .

발의자 : 김삼화 · 정춘숙 · 이동섭
정인화 · 신용현 · 장정숙
김종희 · 오세정 · 이정미
김광수 · 이상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

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이하 이 조에서 “신고된 현장등”이라 한다)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등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 ①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자체 없이 신고된 현장 또는 성폭력 발생이 의심되는 현장 (이하 이 조에서 “신고된 현장 등”이라 한다)에 출동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등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p>

<p>제38조(과태료) <신 설></p> <p>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p>	<p><u>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u>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등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제3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에----- ----- ----- -----. -----.</p>
--	---